「평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30일, 이창열 의원 발의

○ 회부일자: 2026년 10월 8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10월 13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❍ 평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조례의 목적 및 의료비, 기준 중위소득 등 용어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❍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 지원의 근거와 지원대상을 규정(안 제3조)

❍ 지원대상 의료비의 범위 및 지원 제외 항목을 규정하며 동일부위에 대한 지원 횟수를 규정(안 제4조)

❍ 의료비 지원 신청 및 보건의료원장의 검토·보고 절차를 규정(안 제5조)

❍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
❍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와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4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환 치료비 지원 근거를 종합해 볼 때,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거주기간·연령·소득 등 합리적인 지원 요건을 설정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국가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(좌·우 각각 100만 원 한도)과 안질환 수술(좌·우 각각 30만 원 한도)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여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음.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료비 지원신청 절차와 처리기한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

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.

❍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「없음」